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이중과세 완화와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윤성만\*\* · 김완용\*\*\*

#### 〈요 약〉

현행 법인세법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수입배당공제방식으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1999년에 지주회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일반법인에 동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해당 제도의 도입취지는 ‘법인단계에서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것이지만 현행 제도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를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고찰한 뒤, 주요국과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이중과세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는 100%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체계가 아닌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구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수준이 아니다. 또한, 경제적 실체의 형태에 따라서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에게 차등적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는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교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현행 일반법인 3단계 또는 지주회사 4단계의 지분율 구간을 각각 다단계 지분율 구간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연속형 구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하게 된다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액의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액의 규모는 대폭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과세 완화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더욱 부합하면서도,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인 경우간의 형평성도 제고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주제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 형평성, 지분율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2020-0438).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ysm6123@seoultech.ac.kr, 주저자

\*\*\* 송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조교수, wykim@sewc.ac.kr, 교신저자

## I. 서 론

우리나라 세법은 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모두 과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법인의 배당소득과세가 이중과세라는 관점은 법인의제설과 경제적 관점에 따른 통합과세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 선택한 방법은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수입배당공제방식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로 불리고 있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1999년에 지주회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일반법인에 동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해당 제도의 도입취지는 ‘법인 단계에서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것이지만 현행 제도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를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전병욱 2020). 해외 주요국의 동 제도에 대한 특징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피투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피투자회사의 출자비율이나 지분비율이 높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그 수입배당금의 성격이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내부거래와 유사한 경제적 실질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상신 2017). 반면, 영국, 독일 및 EU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지분율과 상관없이 전액을 과세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즉, 경감세율을 적용하거나 차입금 이자비용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것인데, 이들 국가의 경우 일정비율로 익금불산입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높은 이중과세 효과의 제거가 가능하다.

이러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주회사와 일반 내국법인간에 형평성에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고찰한 뒤, 주요국과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이중과세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현행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 및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 II.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 선행연구의 검토

###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검토

#### 가.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의

법인의 배당소득과세가 이중과세라는 관점은 법인의제설과 경제적 관점에 따른 통합과세론에 논거를 두고 있다. 먼저, 법인의제설은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하며, 자연인 외의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에 따라 법인을 자연인으로 의제했기 때문에 법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단계에서 과세하고 나머지 소득이 주주에게 분배된 때에 그 배당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결국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통합에 따른 통합과세론은 도관이론(conduit theory)에 근거하여 법인은 도관에 불과하므로 모든 소득은 주주인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의 조정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은 일반적으로 완전통합방법(full integration)과 부분통합방법(partial integration)으로 구분된다. 완전통합방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주주에 대하여 직접 과세하는 방식으로 주주는 미국세법상 파트너십(partnership)의 파트너(partner)와 유사하게 취급된다(Emil M. Sunley 1992 ; 김의식 2015). 반면, 부분통합방법은 완전통합 방식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소득 중 배당되는 부분의 이중과세 조정에 중점을 두는 방식(dividend relief)이다(이준구 2014). 부분통합 방법은 다시 배당금을 주주의 소득에서 제외하여 법인에 대한 과세로 통합하는 방법방식(수입 배당공제방식, dividend exclusion)과 법인세로 부담한 만큼을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키고 주주에 대한 과세로 통합하는 방법(배당세액공제, imputation)으로 나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공제방식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방식을 두고 있다.

#### 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고찰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1999년에 지주회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일반법인에 동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었다. 지주회사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1999년 4월부터 순수지주회사에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당시 순수지주회사는 지분보유만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지주회사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지주회사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한정하여 배당소득을 지주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1999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하고 2000년 12월에도 개정하였다.

일반 내국법인간 배당의 경우, 2000년 12월 세법개정 이전에는 제한적으로 법인세 이중과세를 조정하였다. 기관투자자가 10%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 90%를 익금불산입하는 단순한 규정만을 적용하였다.

또한 2000년 12월의 세법개정을 통해서 일반 내국법인간 배당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분율이 50% 이상인 피출자법인(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30% 이상)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액의 50%를,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의 3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했는데, 다만, 출자와 관련된 차입이 있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에 이들 익금불산입하는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했으나, 이러한 일반 내국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조치는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되는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 다.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현행 법인세법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일반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8조의3에서 지주회사의 경우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일반회사

###### (가) 출자법인 및 피출자법인의 범위

내국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다. 다만, 다음에서 살펴볼 지주회사중에서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규정을 적용한다.

###### (나)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출자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 1>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A)에서 출자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에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출자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B)을 차감하여 익금불산입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일반법인의 경우)

| 자회사 구분 |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 상장     | 100%           | 100%   |
|        | 30% 이상 100% 미만 | 50%    |
|        | 30% 미만         | 30%    |
| 비상장    | 100%           | 100%   |
|        | 50% 이상 100% 미만 | 50%    |
|        | 50% 미만         | 30%    |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배제<sup>1)</sup>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 ② 유동화전문회사 등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③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특정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2) 지주회사

## (가)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범위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지주회사”라 하며, 이러한 지주회사가 다음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게 된다.<sup>2)</sup>

- ① 지분을 요건 :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 (주권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 ② 업종요건 : 다음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일 것
  -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 금융기관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

- ㉞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나)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지주회사가 받은 자회사별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 2>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A)에서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에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B)을 차감하여 익금불산입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4)</sup>

<표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지주회사의 경우)

| 자회사 구분 |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 상장     | 40% 이상                   | 100%   |
|        | 30% 이상 40% 미만            | 90%    |
|        | 20% 이상 30% 미만            | 80%    |
| 비상장    | 80% 이상                   | 100%   |
|        | 50% 이상 80% 미만            | 90%    |
|        | 40%(벤처기업은 20%) 이상 50% 미만 | 80%    |

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

현행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종합하여 보면,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면서,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인지 또는 비상장법인지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달라지고 있다.

먼저, 투자회사가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른 차등적인 익금불산입률 설정으로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20%,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40%가 넘어가는 순간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이 현격하게 높아진다. 이렇게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법인의 경제적 실체의 형태에 따라서 차등적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는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또한,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인지 또는 비상장법인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수준이 달라

3)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4) 여기서 (A-B)를 간략하게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수입배당금} \times \text{익금불산입률(A)} \\ & - \text{차입금이자} \times \frac{\text{익금불산입 대상 주식의(세무상) 장부가액 적수}}{\text{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 \times \text{익금불산입률(B)} \end{aligned}$$

진다. 이는 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따라서 투자수익 성격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가 되므로, 형평성에 위배되는 격이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자본조달이 상장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비상장법인의 자본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며,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동 제도의 도입취지가 본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와 더불어 지주회사의 활성화차원이라 하더라도 형평성 측면에서는 본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EU 주요국을 대상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제도를 평가 분석한 이성봉(2001)은 EU 주요국이 개인주주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각기 다른 수준(강도)의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법인주주 단계에서는 완전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시키는 정도의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로서 개인주주 단계에서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조정되는 반면 법인주주의 단계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EU 수준만큼 완화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만수(2002)는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하에서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간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 적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으로 구분하고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아무런 경제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반법인 그리고 비상장법인인 피투자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만우와 김균(2003)은 배당정책에 대한 세제의 비중립성을 지적하면서 자기자본의 사용에 비해 타인자본의 사용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배제 등 불이익을 준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사용에 대한 세제의 중립성을 유지하여 자본조달방법의 결정에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대한 실증연구로서 최원욱 등(2005)은 동 제도의 시행으로 조세혜택이 있는 법인의 주식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양(+)을 값을 나타내었으며, 배당수익의 크기와 거래량에 있어서도 증가하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용운과 이병산(2007)도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일반법인의 지분율과 배당률 간에 양(+)의 관련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성엽 등(2012)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있어서 피투자법인의 주식평가금액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익금불산입액에서 배제되는 지급이자에 적용되는 자산총액 대비 동 법인의 투자주식 장부가액에서 각각 피투자법인과 관련된 평가손익을 차

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강성순과 이철행(2013)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국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낮은 상태이며,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그리고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그리고 비상장법인인지에 따라 다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단일비율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김강남(2016)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있어서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의 투자에 대한 차별적인 세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세중립성 위배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고, 익금불산입률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에게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거나 일반법인에게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현행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의영(2017)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배제되는 차입금의 이자와 관련된 판례를 해석하면서, 배제되는 차입금의 이자 범위에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이자, 매출어음 할인료, 발행 금융채권의 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 타행환조정자금 이자, 어음교환자금 조정이자 및 자기앞 수표정보교환조정자금 이자 등을 포함여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본 차입금의 이자를 배제하는 취지로서 재무구조 부실화 우려 등과 관련이 없고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르는데 있기 때문에 동 차입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상신(2017)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시 차입금의 범위에 경상적·반복적인 부분을 제외한 차입금의 이자를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 판결의 차입금 범위는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익금불산입률이 낮고 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를 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익금불산입액에서 배제되는 차입금의 이자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은 이중과세 완화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병욱(2020)은 법인주주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배당금수익의 일부가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되지 않은 한계점을 지적하였으며, 최근 들어 익금불산입률을 인상하였지만 이중과세의 여지가 매우 축소된 지주회사에 비해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여전히 충분하게 높지 않아 때문에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이중과세에 따른 이들 법인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일반회사와 지주회사간에 그리고 회사의 종류별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의 차등적용으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III. 해외 주요국 입법례의 분석

#### 1. 미국과 일본

미국의 경우에 내국법인 또는 재무부에 의해 승인받은 적격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인 경우에 한하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동 제도는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분율(출자비율)에 따른 조정을 하는 제도이다. 다음 <표 3>에서와 같이, 피출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을 20%과 80%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익금불산입률을 각각 70%, 80% 및 100%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피출자회사에는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사업투자회사 등을 포함한 법정투자회사 등이 포함되며, 폐쇄회사인 S-corporation은 C-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45일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sup>5)</sup>

<표 3> 일반법인 피출자회사의 익금불산입 비율

| 피출자회사 출자 비율   | 익금불산입 금액      |
|---------------|---------------|
| 20% 미만        | 수입배당금액 × 70%  |
| 20% 이상 80% 미만 | 수입배당금액 × 80%  |
| 80% 이상        | 수입배당금액 × 100% |

일본도 마찬가지로 내국법인이 잉여금의 배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로 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 지분비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20%, 1/3 이하의 비율에는 50%, 1/3을 초과하는 경우와 완전자회사의 경우에는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있다.<sup>6)</sup> 물론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 공익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등으로 부터의 수입배당금 및, 간주배당 등은 이러한 익금불산입제도에서 제외된다(이상신 2017).

5) Hoffman · Raabe · Smith · Maloney, Corporations, Partnerships, Estates&Trusts, South - Western(2010 ed.), pp.12-28.

IRC §243 및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publications/p542#en\\_US\\_201809\\_publink1000257826](https://www.irs.gov/publications/p542#en_US_201809_publink1000257826), 검색일자 : 2020. 10. 20.) 참조.

6) 일본 재무부([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risi03.htm](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risi03.htm), 검색일자 : 2020. 10.20.) 참조.

## 2. 영국과 독일 및 EU<sup>7)</sup>

영국의 경우 수입배당금을 면제투자소득(Franked Investment Income)으로 정의하고 이를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즉 과세된 면제투자소득 전체를 세액공제하는 체계인데, 이 면제투자소득에는 수입배당금 뿐만 아니라 배당가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된다.<sup>8)</sup> 배당금 소득에 해당하는 회사의 세금이 전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중 과세는 완전히 제거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수입배당금을 과세소득 산정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전액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피투자회사 투자재원이 차입금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의 5%에 달하는 금액까지는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며 이를 초과 하는 비용만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이다. 즉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수입배당금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U집행위원회의 2011년 CCCTB 지침제안서에도 세율은 각국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은 통일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인데, 독일과 마찬가지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며, 차입금 이자를 고정비율(fixed rate)인 5%로 추정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에 제안된 최근의 EC의 CCCTB 지침제안서는 2011년 제안서와 달리 그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한정하였는데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의 지배와 지분권 또는 수익분배권의 75% 이상인 소유의 요건을 구비한 모회사간 의 배당의 경우 수입배당금과 그에 관련된 비용 전부가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된다.

## 3. 시사점

미국과 영국, 일본과 독일 및 EU도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또는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의 산정 측면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피투자회사 출자비용 또는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피투자회사의 출자비용이나 지분비율이 높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그 수입배당금의 성격이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내부거래와 유사한 경제적 실질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상신 2017).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7) 일본 재무부 홈페이지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으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의 배당소득 조정 방법을 비교하여 공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독일과 EU의 사례를 파악하였다([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risi03.htm](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risi03.htm), 검색일자 : 2020.10.20.).

8)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any-taxation-manual/ctm16120>, 검색일 : 2020.10.20.) 참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차등적인 비율을 적용함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비하여 법인주주의 이중과세 조정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에 반해, 영국, 독일 및 EU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지분율과 상관없이 전액을 과세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는 경감세율을 적용하거나 차입금 이자 비용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것인데, 이들 국가의 경우 일정비율로 익금불산입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높은 이중과세 효과의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처럼 100%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산정하는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가 있는데,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정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IV.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문제점

#### 가.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수준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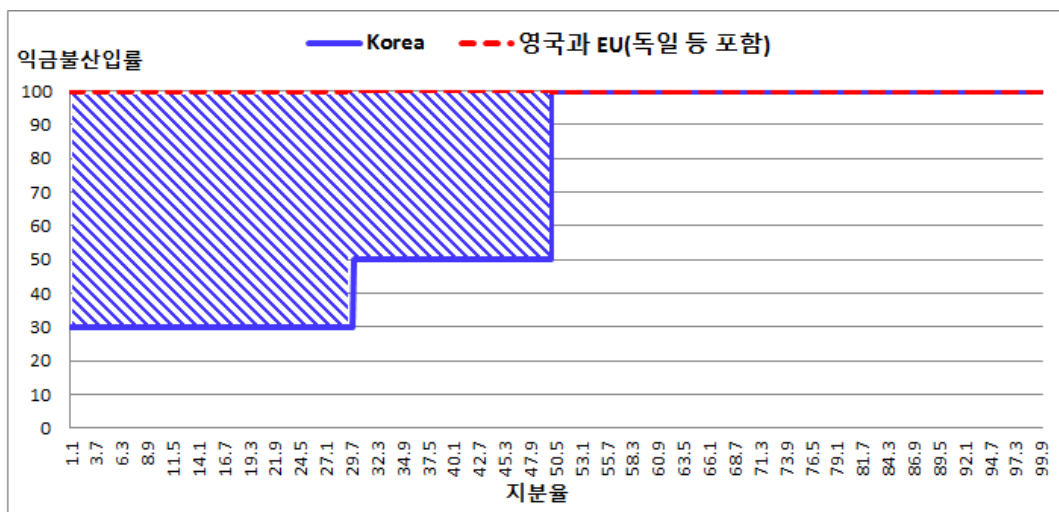
독일을 포함한 EU국과 영국은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와는 달리, 피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용 또는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지 않고 지분율과 상관없이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고 할 수 있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 취지가 이른바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인단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후 그 소득금액이 법인주주에게 배당될 때 다시 법인주주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법인주주단계에서의 수입배당금을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는 100%의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체계가 아닌 피투자회사의 지분율 구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중과세의 문제 완화수준이 아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영국이나 EU에 비해 차등적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와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완화되지 않는 규모는 음영처리된 면적만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이중과세 효과는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완전한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중과세의 문제는 익금불산입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지분율

100% 미만(지주회사는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이면 40% 미만, 비상장법인이면 80% 미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완전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이상신 2017 ; 전병욱 2020).<sup>9)</sup>

〈그림 1〉 영국·EU와의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수준 비교



- 주1) 우리나라는 일반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피투자회사에 투자한 경우로 가정한 것이며, 영국과 EU는 지분율에 따른 차등적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  
 주2) 위의 음영처리된 영역은 영국 또는 EU와 한국의 익금불산입률이 차이나는 부분이며, 위의 영역은 한국의 이중과세 부분이 완화되지 않는 규모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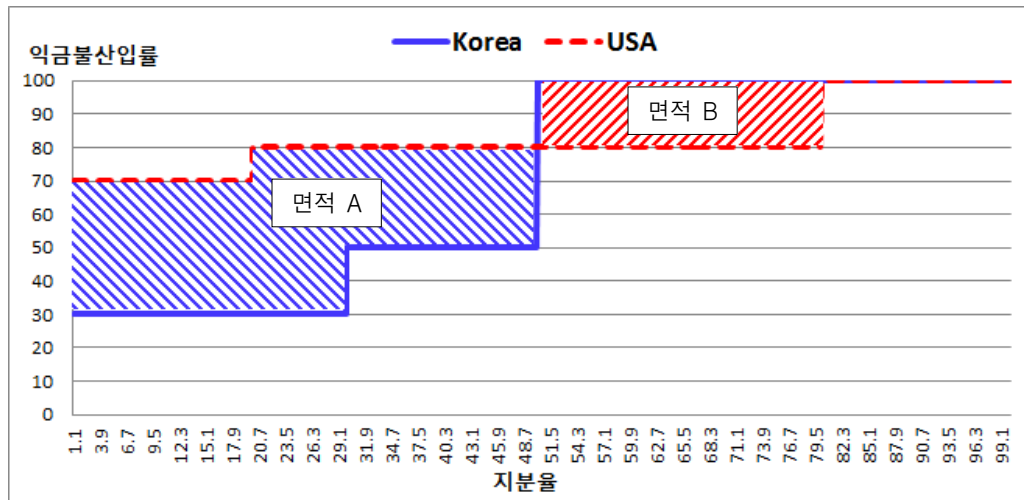
한편, 영국이나 EU회원국처럼 일괄적으로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지 않고, 지분율 구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미국 및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동 제도가 상대적으로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미국과 비교하면 피투자회사의 지분율 50%까지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완화수준이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분율 50%~80% 구간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이중과세 완화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분율 구간 전체에 걸쳐서 보면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완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면적 A > 면적 B) 나타난다.

9) 전병욱(2020)의 연구에서는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대비 62.1%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시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우회 지급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개인주주의 세금부담의 합계액이 증가하는 것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불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인상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을 5.9%에서 감소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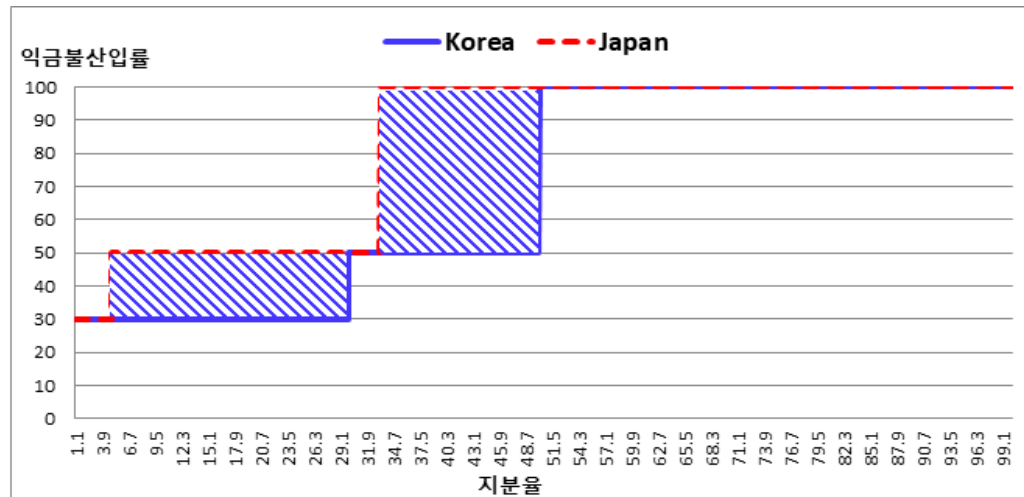
또한 일본과의 비교에서도 지분비율이 5%~30% 구간과 33.33%~50% 구간에서 일본의 익금불산입률이 높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완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즉 지분율 30% 이하 구간에서는 일본에 비해 20%의 익금불산입률이 낮은 수준이며 33.33%~50% 구간에서는 50%의 익금불산입률이 낮은 것이다.

〈그림 2〉 미국 및 일본과의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수준 비교

패널 A : 미국과의 비교



패널 B : 일본과의 비교



- 주1) 우리나라는 일반법인인 주권상장법인인 피투자회사에 투자한 경우로 가정한 것임  
 주2) 위의 음영처리된 영역은 미국 또는 일본과 한국의 익금불산입률이 차이나는 부분이며, 위의 영역은 한국의 이중과세 부분이 완화되지 않는 규모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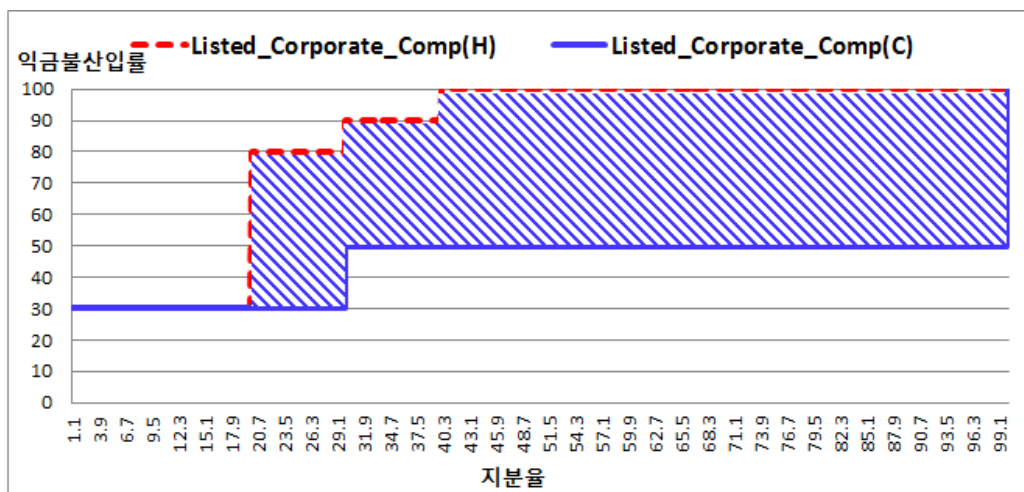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통한 법인주주단계에서의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수준이 영국이나 EU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특히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지분율 구간에 따른 차등적 익금불산입률의 적용 측면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익금불산입률은 지분율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유사한 익금불산입률에 대응되는 지분율 구간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정도가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 차등적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동시에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인지 또는 비상장법인인지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달라지고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른 차등적인 익금불산입률 설정으로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20%~50% 구간에서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이 현격하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40%~80%의 구간에서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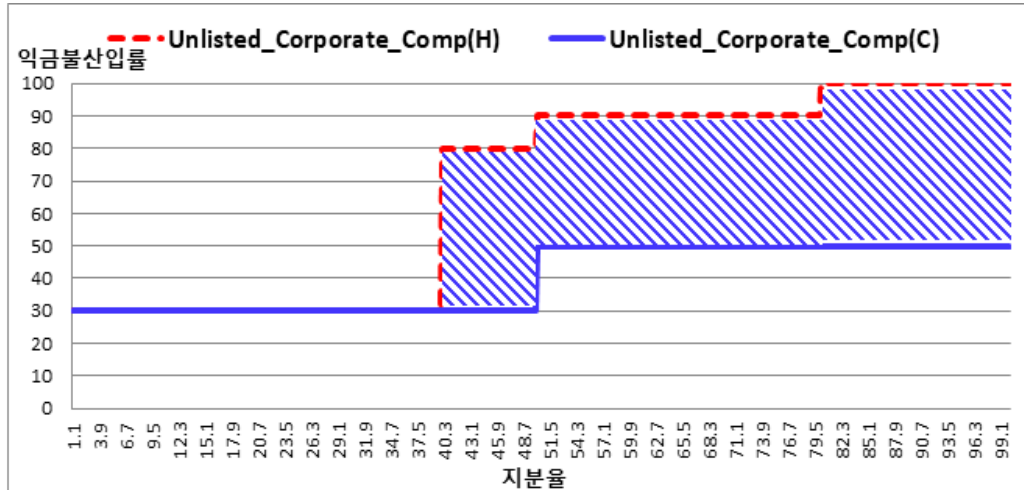
이렇게 경제적 실체의 형태 즉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에게 차등적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는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의 차별적 익금불산입률 적용으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수준  
패널 A : 상장법인에 대한 지주회사 및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



〈그림 3〉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의 차별적 익금불산입률 적용으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수준 (계속)

패널 B : 비상장법인에 대한 지주회사 및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



주1) 위의 음영처리된 영역은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이 차이나는 부분이며, 위의 영역은 일반법인의 이중과세 부분이 지주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지 않는 규모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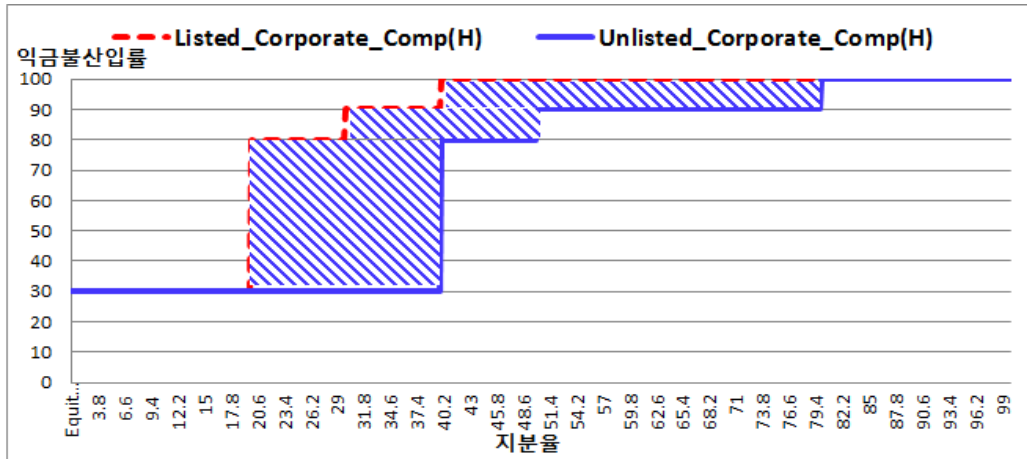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인지 또는 비상장법인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수준이 달라진다. <그림 4>의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 20%~80%까지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일 때와 비상장법인일때의 익금불산입률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지주회사의 투자대상에 따라서 투자수익 성격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가 되므로, 형평성에 위배되는 격이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자본조달이 상장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비상장법인의 자본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며,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분율 30%~50%미만 구간에서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일 때에 비해 비상장법인일 때의 익금불산입률이 낮은 수준이다. 이 또한 투자대상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경우에 따라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피투자회사에 따라 동일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차별적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어 형평성을 위배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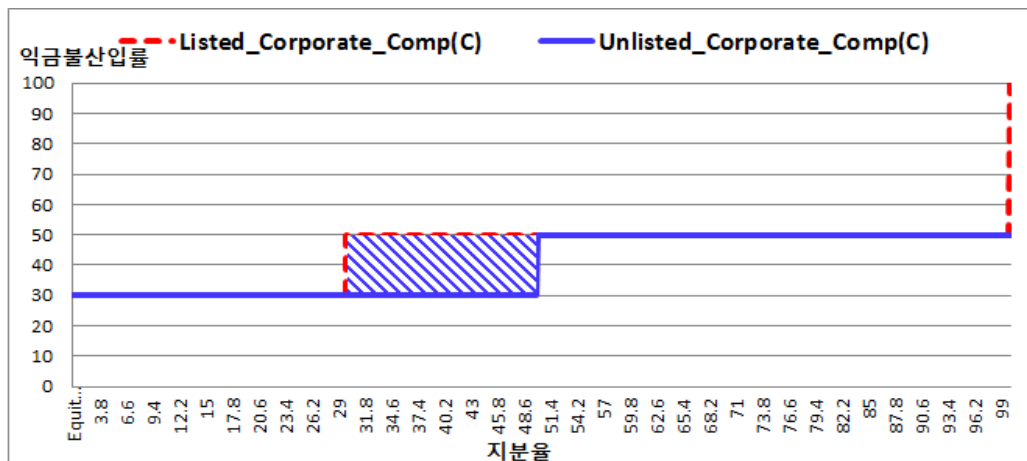
물론 동 제도의 도입취지가 본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가기도 하지만 지주회사의 활성화차원이라 하더라도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려는 본래의 도입취지와는 많이 벗어난 상황이다.

〈그림 4〉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의 차별적인 익금불산입률 적용으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수준

패널 A : 지주회사 투자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익금불산입률



패널 B : 일반법인 투자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익금불산입률



주1) 위의 음영처리된 영역은 상장 및 비상장 피투자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차이나는 부분이며, 위의 영역은 비상장 피투자회사의 이중과세 부분이 상장 피투자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지 않는 규모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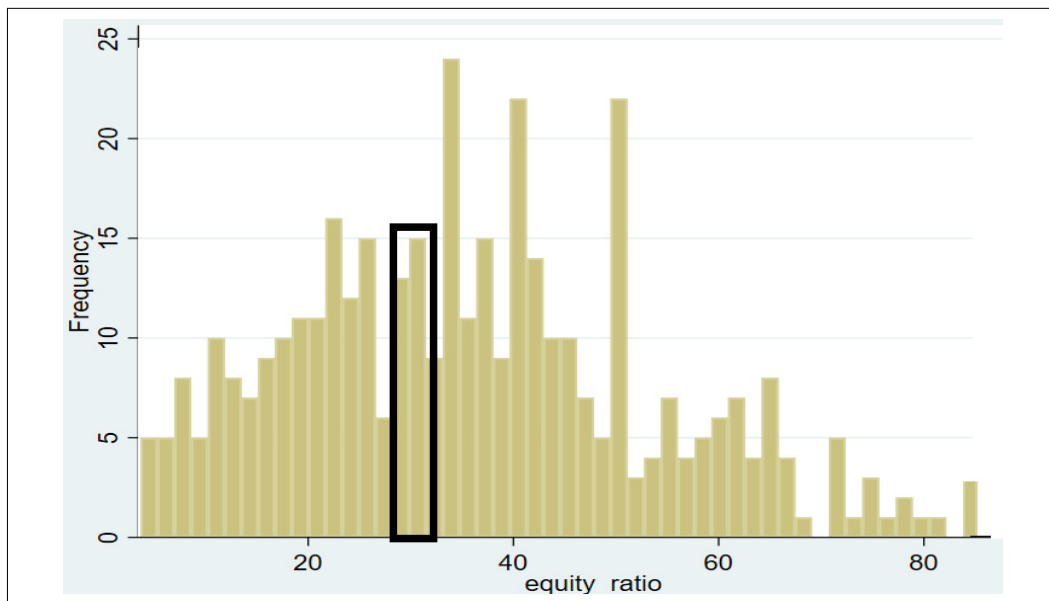
#### 다. 지분율 구간의 문턱효과 측면

지분율 구간에 따른 차등적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경우, 하위구간에서 상위구간으로 전환되는 점에서 문턱효과(threshold effects)가 발생된다. 즉 일반법인의 경우,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또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30%(50%)에 미달하게 되어 익금불산입률 30%를 적용받는 것보다 30%(50%)의 지분율 이상으로만 상향조정하면 5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된다. 따

라서 상장법인(비상장법)에 대한 30%(50%)의 지분율은 문턱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각 세법에서 구간이나 문턱을 설정하여 세부담을 달리하거나 납세협력비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박종상(2016), 박희준과 정래용(2014) 및 이상엽과 윤성만(2017)은 선긋기와 같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기준금액 전후의 세부담 차이를 크게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절세 노력을 유발하여 자산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문턱에 약간 못 미치는 지분율을 보유한 법인과 문턱을 약간 넘긴 법인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비록 거의 차이가 없는 지분율을 보유한 법인이라도 이러한 문턱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달라진다면 이는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결과가 된다.

<그림 5>는 주권상장법인의 제1대 및 제2대 주주 중 법인주주(비영리법인은 제외)의 지분율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지분율 5%씩의 구간으로서 30%~35% 구간에 직전 구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른 유인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턱효과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5> 상장법인의 제1대 및 제2대 주주의 지분율 분포



주1) 주권상장법인의 제1대, 제2대 주주 중 법인주주의 지분율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만약 제3대, 4대, 5대 주주를 포함할 경우 30% 지분율 미만의 구간에 현격하게 높은 빈도를 나타냄

##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

### 가. 지분율 구간을 다단계로 설정하는 방안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완전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현행 지분율 구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시키면서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간의 조세형평성 그리고 상장 피투자회사와 비상장 피투자회사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현행 일반법인 3단계 또는 지주회사 4단계의 지분율 구간을 각각 다단계 지분율 구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현행 최저와 최고 지분율의 각각 익금불산입률을 고정시킨 후 최저 0~70% 최고 지분율 구간을 5%씩으로 구간들을 설정하고 각 구간들에 대응한 익금불산입률을 일정 증분하는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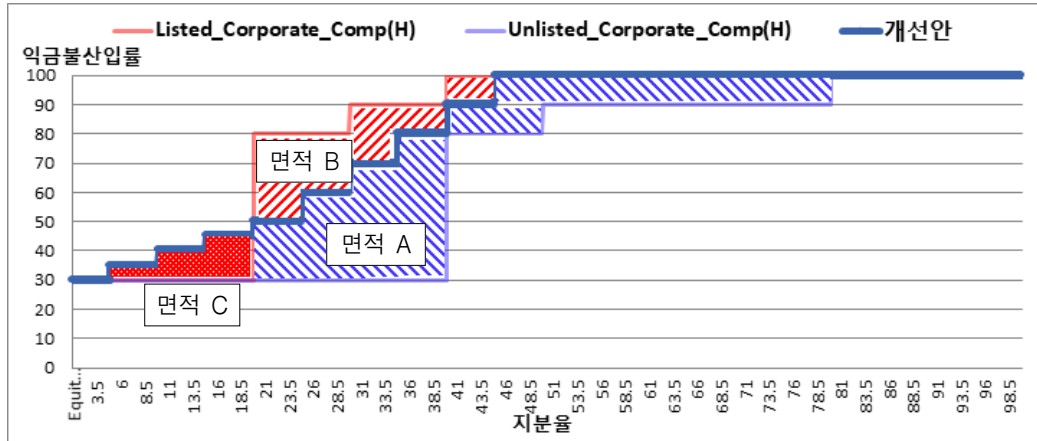
<그림 6>의 패널 A에서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 5% 미만은 30%의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5%~10% 구간에서는 35%의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10%~15% 구간은 40%, 지분율 15%~20% 구간에서는 50% 그리고 지분율 20%~25% 구간에서는 55%과 같이, 이후 5% 구간 마다 10%를 더하여 익금불산입률을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지주회사의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40% 그리고 비상장법인인 경우 80% 초과할 경우에 각각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고 지분율은 구간은 40%와 80%의 중간 지점인 60%로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한 결과, 피투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우하향 빗면의 면적(면적 A)이 현행보다 증가하는 익금불산입률의 규모를 나타낸다.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우상향 빗면의 면적(면적 B)은 현행 익금불산입률보다 감소하는 규모를 나타내지만, 음영부분의 면적(면적 C)은 현행보다 익금불산입률이 증가하는 규모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개선안에 따른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은 조금 증가하는 결과(면적 A+면적 C<면적 B)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패널 B에서 일반법인의 경우, 지분율 5% 미만 구간은 30%, 이후 지분율 5%씩의 구간마다 5%씩을 가산하여 최고 지분율 70%에서 100%의 익금불산입률이 산정되는 체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한 결과, 우하향 빗면(면적 A)은 익금불산입률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음영처리된 부분(면적 B)은 상장 및 비상장 피투자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차이 나는 부분이다. 개선안을 반영하는 경우, 일반법인의 피투자회사가 비상장법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률이 ‘면적 A와 면적 B의 합계’만큼 증가하는 반면,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증가율이 ‘면적 A’만큼 증가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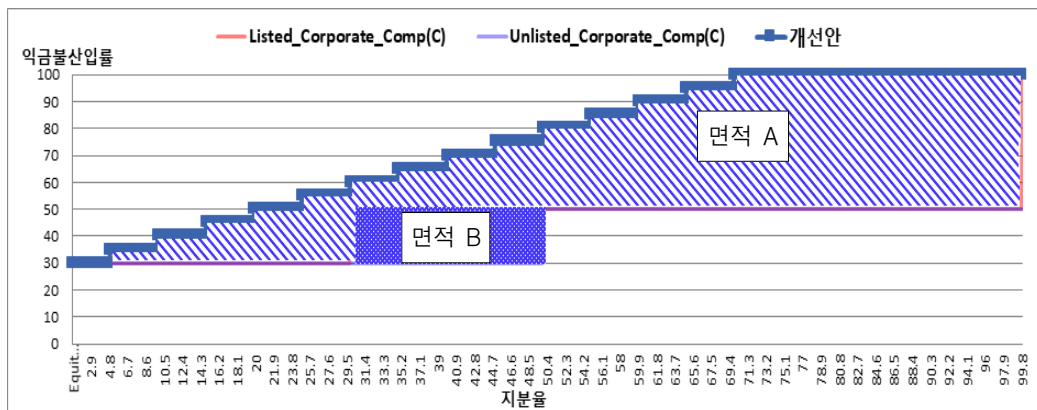
10) 물론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일정 차입금이자를 배제하는 것도 완전한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의 장애요인 이긴 하지만,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으로 적용한다는 논거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입금이자 부분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림 6〉 5% 지분율 구간별 익금불산입률 대응 방안 :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의 구분

패널 A : 지주회사



패널 B : 일반법인



이러한 개선안으로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액의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액의 규모는 대폭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이 결과는 이중과세 완화효과도 증가하면서,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인 경우의 형평성은 제고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 나. 지분율과 익금불산입률의 연속적인 연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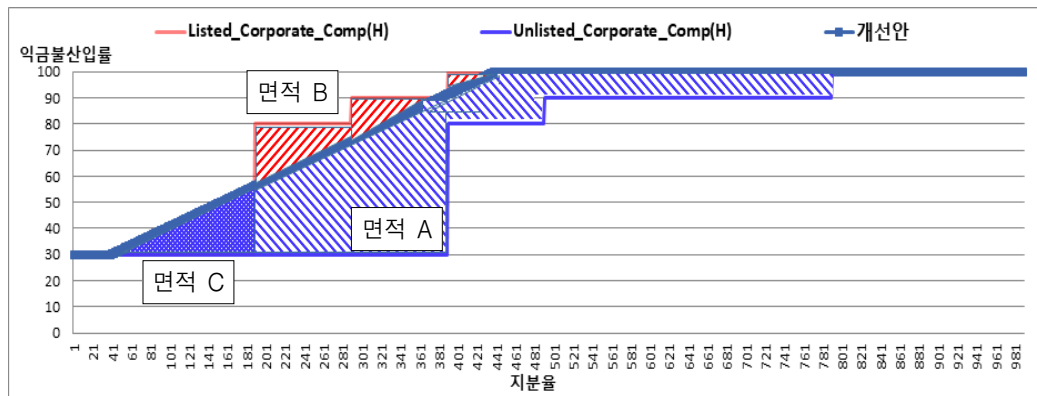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다단계 설정방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계단식 구조를 선형으로 연속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문턱효과를 보다 강력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행 최저 지분율의 익금불산입률을 Y축 절편으로 하는 선형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한 결과

는 다음 <그림 7>에 나타나는데, <그림 6>의 계단식 구조보다 이중과세 완화의 효과성 및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형평성 완화효과가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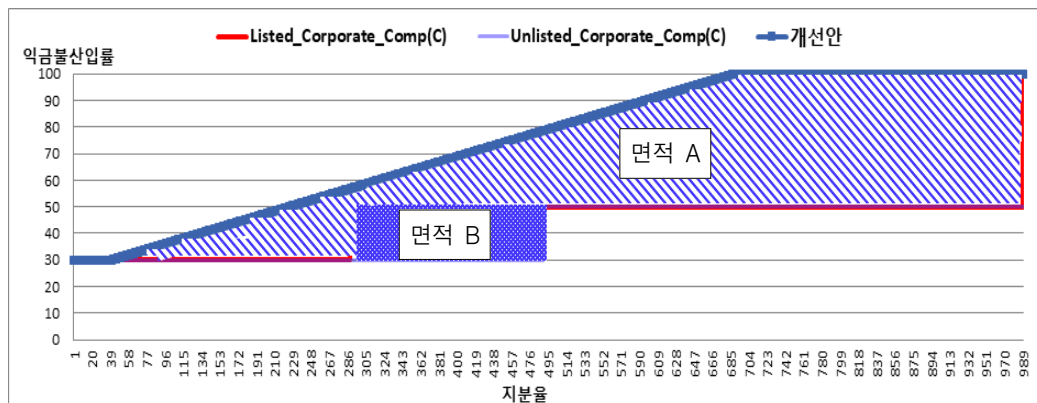
먼저 패널 A에서 지주회사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지분율 30%미만 구간에서는 30%, 30%초과 45%이하 구간에서는 “ $30\% + (\text{지분율} - 30\%) \times 7/4$ ”, 45% 초과 구간에서는 100%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하게 되면, 피투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에 면적 A만큼 현행보다 익금불산입률의 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면적 B만큼 현행 익금불산입률보다 감소지만, 면적 C 만큼 익금불산입률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개선안에 따른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이 증가하는 결과(면적 A+면적 C < 면적 B)를 가져오는 것은 단계적 모형과 동일하지만, 그 증가폭이 보다 크게 되어 이중과세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개선되고 있다.

<그림 7> 연속적 익금불산입률 대응 방안 :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의 구분

패널 A : 지주회사



패널 B : 일반법인



패널 B에서 일반회사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지분율 5%미만 구간에서는 30%, 5%초과 70%이하 구간에서는 “ $30\% + (\text{지분율} - 5\%) \times 70/65$ ”, 70% 초과 구간에서는 100%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하게 되면, 피투자회사가 비상장법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률이 ‘면적 A와 면적 B의 합계’만큼 증가하는 반면,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증가율이 ‘면적 A’만큼 증가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개선안으로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액의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액의 규모는 대폭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이 결과는 이중과세 완화효과도 증가하면서,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인 경우의 형평성은 제고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익금불산입률이 선형구조로 바뀐에 따라서 기존의 계단식 구조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문턱효과가 해결될 수 있다.

## V. 연구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고찰한 뒤, 주요국과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이중과세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은 일반적으로 완전통합방법(full integration)과 부분통합방법(partial integration)으로 구분되는데, 완전통합방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주주에 대하여 직접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부분통합방법은 완전통합 방식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소득 중 배당되는 부분의 이중과세 조정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부분통합의 조정방법은 크게 수입배당공제방식(dividend-exclusion) 방식과 배당세액공제(imputation)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수입배당공제방식이 현행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인 것이다.

주요국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영국, 독일 및 EU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수입배당금 전액을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100%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한 이중과세 조정), 지분율에 따라서 익금불산입률을 다르게 산정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동일한 방식을 채택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정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함에서 있어서 차입금을 통한 투자의 경우 해당 부채의 자본조달 비용을 직접 익금불산입액에서 배제하는지 또는 손비로서 인정하지 않는지를 비교한 결과, 일본만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서 직접 차입금이자 의 일정부분을 배제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독일

및 EU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액에서 차입금의 일정비율을 배제 또는 공제하는 제도는 없지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입배당금을 발생시키는데 소요되었던 차입금의 이자 등의 비용은 손금불산입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는 100%의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체계가 아닌 피투자회사의 지분율 구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중과세의 문제 완화수준이 아니다. 또한, 경제적 실체의 형태에 따라서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에게 차등적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는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교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현행 일반법인 3단계 또는 지주회사 4단계의 지분율 구간을 각각 다단계 지분율 구간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연속형 구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최저와 최고 지분율의 각각 익금불산입률을 고정시킨 후 최저 0~70% 최고 지분율 구간을 5%씩으로 구간들을 설정하고 각 구간들에 대응한 익금불산입률을 일정 증분하는 형태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 5% 미만은 30%의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5%~10% 구간에서는 35%의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10%~15% 구간은 40%, 지분율 15%~20% 구간에서는 50% 그리고 지분율 20%~25% 구간에서는 55%와 같이, 이후 5% 구간 마다 10%를 더하여 익금불산입률을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지주회사의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40% 그리고 비상장법인인 경우 80% 초과할 경우에 각각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고 지분율은 구간은 40%와 80%의 중간 지점인 60%로 설정하게 된다.

둘째, 다단계 설정방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계단식 구조를 선형으로 연속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문턱효과를 보다 강력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행 최저 지분율의 익금불산입률을 Y축 절편으로 하는 선형 모형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지주회사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지분율 30%미만 구간에서는 30%, 30%초과 45%이하 구간에서는 “ $30\% + (\text{지분율} - 30\%) \times 7/4$ ”, 45% 초과 구간에서는 100%를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회사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지분율 5%미만 구간에서는 30%, 5%초과 70%이하 구간에서는 “ $30\% + (\text{지분율} - 5\%) \times 70/65$ ”, 70% 초과 구간에서는 100%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하게 된다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액의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액의 규모는 대폭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이중과세 완화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하면서도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인 경우간의 형평성도 제고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참고문헌

- 강성순·이철행. 2013.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 177-215.
- 김강남. 2016. 국내 및 해외 직접투자 관련 이중과세 조정의 시뮬레이션 효과분석.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의식. 2015. “법인세의 경제적 귀착 관점에서 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조세법연구 제21권 : 163-164.
- 박종상. 2016. 『선국기를 통한 금융소득 과세 대상 기준 설정 현황과 개선방향』. 금융연구원.
- 박희준·정래용. 2014.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연구-기준금액 인하의 영향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 603-633.
- 성용운·이병산. 200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기업의 배당에 미친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8권 제4호 : 9-37.
- 이만우·김 균. 2003.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연구. 경산논집.
- 이상신. 2017.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 시 차입금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두49115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와 법 제10권 제2호 : 109-133.
- 이상엽·윤성만. 2016.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성엽·전규안·김완희. 2012. “법인세법상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중심”.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 91-116.
- 이성봉. 2001. “EU 주요국의 법인소득 이중과세 관련 제도 분석 및 한국과의 비교에 관한 연구”. EU학연구 제6권 제1호 : 121-150.
- 이의영. 2017. “법인주주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산정의 취지와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 105-137.
- 이준구. 2014. 『재정학』. 다산출판사.
- 전병욱. 202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 31-61.
- 최원욱·윤희화·이영한. 200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시행에 따른 암묵적 조세와 납세자 속성에 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0권 제3호 : 147-172.
- 한만수. 200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에 관한 고찰”. 조세법연구 제8권 제2호 : 440-461.
- Hoffman · Raabe · Smith · Maloney, Corporations, Partnerships, Estates&Trusts, South - Western (2010 ed.)
-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 일본 재무부 (<https://www.mof.go.jp>)
-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Dividend-Exclusion System : Focusing on Reliving Double Taxation and Enhancing Equity

Sung-Man Yoon\* · Wan-Yong Kim\*\*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Dividend-Exclusion System, and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and improve equity.

Under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the income non-inclusion rate for income dividends is not a system that alleviates the problem of 100% double taxation, but the non-income rate differentially applied according to the equity ratio section of the investee. This is not the level of mitigation of the problem of complete double taxation. In addition, different levels of mitigating the double taxation problem by applying differential non-income rates to holding companies and general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 form of economic entity do not meet the purpose of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wo ways to improve the current general corporation's 3rd stage or the 4th stage of the holding company's equity ratio section as follows. First, it is a method of converting each to a multi-stage share ratio section. Second, it is a method of converting into a continuous form between the equity ratio and non-inclusion ratio.

These improvements increase slightly the amount of non-inclusive income of the holding company, while the size of the non-income amount of general corporations increase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overall amount of non-inclusive income from dividends. As a result of this, the mitigation effect of the double taxation problem is improved and also each has the effect of improving the equity.

〈Key words〉 Income Dividend Payable, Dividend-Exclusion, Double Taxation, Equity, Equity Ratio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sm6123@seoultech.ac.kr,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ax & Accounting, SoongEui Women's College, wykim@sewc.ac.kr, Corresponding Author